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4,778,000	15,143,340
일반회계	454,953,592	13,648,608
특별회계	49,824,408	1,494,732
공기업특별회계	20,713,699	621,41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713,699	621,411
기타특별회계	29,110,709	873,321
주택사업특별회계	12,100	363
의료보호특별회계	343,978	10,319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40,000	46,2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74,564	29,237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74,055	38,222
수질개선특별회계	24,146,012	724,380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720,000	21,6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09,65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